[별지 제16호 서식]

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: 20 년 월 일

아래와 같이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과 동시에 부금의 통산을 신청합니다.

성 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	연 락 처	
부금통산 승인 후 30일 내 철회할 수 있으며,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해약하는 경우 전 계약의 부금을 포함한 납부하신 부금 전액에 대해 일반해약 환급률이 적용되어 납입한 부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				서명 또는 날인

○ 종전계약사항

계약번호		계약종료사유 발생일	20 년 월 일

○ 부금통산사유

해당란 √표	종전계약 종료사유
	[개인] 폐 업 (현물출자 폐업 포함)
	[개인] 공동사업탈퇴
	[법인] 폐 업
	[법인] 해 산
	[법인] 대표퇴임

※ 부금통산 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사후부금은 신계약의 부금으로 통산합니다.

○신계약 청약사항

업 종	□□□□□ ※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업태·종목을 기재		상시근로자 수	_____명 (년 월)
매출액	직전년도 년 백만원	직전년도-1 년 백만원	직전년도-2 년 백만원	* 매출 증빙 가능한 직전년도 3년간 매출액을 기재 *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상 연매출액 기재
사업상 지위 (해당란 √표)	□개인사업자 □법인대표자		사 업 체 전 화	
사업체의 명 칭	※신계약을 청약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을 기재		사업자등록번호	
			법인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	
개업일자	년 월 일		사 업 체 FAX	
사업체소재지			연락처 선택 (해당란 √표)	□자택주소 □사업체소재지
부금월액	※부금월액은 최저 50,000원에서 10,000원 단위로 최고 1,000,000원까지이며 분기납의 경우 3개월분의 부금을 매 분기 납부합니다.			부금납부주기 □월납 □분기납
	*			부금납부기일 매월 ( )일 매 분기 ( )째달 ( )일

☒	백만	십만	만	천	백	십	일	
*								

● ① 부금 등 자동이체신청, ② 개인정보활용동의 여부, ③ E-메일 수신동의 여부 및 ④ SMS 수신동의 여부는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부금통산 시에는 종전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통산시점의 약관과 세법이 적용됩니다.

☞ 첨 부 서 류

1.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
   - 폐 업 시 : 폐업증명서
   - 공동사업탈퇴시 : 탈퇴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철회서(탈퇴 또는 동업계약철회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추가) 및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
   - 법인해산시 :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   - 퇴 임 시 :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2. 신계약의 청약서류 : ①청약자의 신분증 사본(우편 등 비대면 가입채널중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), ②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③사업체의 제무제표, 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④법인등기부등본(사업체가 법인인 경우)

(2022. 5. 16. 개정시행) (2025. 12. 18개정, 2026. 1. 1시행)